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나20037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정우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유한나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10. 20.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56352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3. 3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과 피고와 소외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3. 3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소외 D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각 하고, 소외 E의 파산관재인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라.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일부를 고치고, 제3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들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선고하였다”를 “선고하였고 이에 G 등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원고의 G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은 2020. 3. 30.경을 기준으로 하여 원리금 합계 91,114,426,691원이 남아 있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18호증”을 “18, 20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11호증의”를 “11, 28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 제8면 제9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의 “AD은행에”를 “AD은행 및 제2 우선수익권자인 A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9행의 “추정된다”를 “추정된다(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 행사이고, C, D이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H, C, D의 관계, C와 D이 피고에 대해서만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한 사정을 고려하면 C와 D이 피고와 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G이 추가로 변제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각 대출 실행액은 실제로는 당초 G과 A이 약정한 것보다 적은 바,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내지는 액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실제 가치는 685,206,800원에 불과하여 C 및 D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 비중이 작고, C와 D이 원고에게 변제한 원리금보다도 훨씬 적은 액수인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에 대한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가단5201999 판결) 원고가 C에 대해서는 67,600,000,000원 한도의, D에 대해서는

63,100,000,000원 한도의 각 연대보증채권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 피고는 G이 2016. 1. ~ 3.경 AE 주식회사로부터 679,422,628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18 ~ 23호증)에 의하더라도 이는 AE 주식회사의 출금내역과 입금내역만을 제시한 것일 뿐 G이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돈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각 연대보증채권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원금 52,000,000,000원에 관하여 G이 대출금을 실제 인출하기 위해서는 A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A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대출원금은 360억 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일반대출에 관하여 2009. 7. 6. G 계좌로 420억 원이 입금된 이상(갑 제20호증, 을 제26호증), 420억 원 전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종합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형식의 대출로서 실제 합계 9,819,917,041원이 인출된 이상(갑 제20호증, 을 제27호증) 이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라) 2020. 5. 15. 기준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 채무는 82,712,248,826원이 남아 있었고, 2020. 8. 28. 1,031,323,383원, 2022. 1. 12. 11,404,407,891원의 변제가 이루어져 이를 반영하면 당심 계속중인 2022. 2. 3. 기준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의 원리금은 76,826,591,432원이 되는데(갑 제18, 20호증), 이 법원의 변론종결 당시 최소한 위 금액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실제 가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C 및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은 C 및 D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파산채무자 E의 파산관재인이 2022. 7. 29.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최후 배당표에 위 각 채권과 관련한 배당지급액이 합계 685,206,8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등 참조), 파산채무자 E의 대리인이 원고에게 E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공고가 이루어진 2017. 4. 18.로부터 3년여가 경과한 2020. 3. 31. ‘E에 대한 파산채권이 1,063,992,447원(C), 1,187,961,879원(D)에 이르므로 권리보전절차를 취하기를 당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그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있는 후에 그 목적물의 실제 가치가 확정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실제 가치가 C, D이 보유한 자산 중 그 비중이 적거나 원고에게 C나 D이 변제한 원리금에 비해 그 액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C와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대여금 채무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위 회사들이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두고 대여금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보기는 어렵다(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실제 가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성, 채무자인 C 및 D의 각 사해의사, 피고의 악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소가 원고의 권리남용 취지에서 제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채동수, 판사 송영승

[별지]

목록(양도채권의 표시)

1. [] 주식회사가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46 파산사건과 관련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일십억육천삼백구십구만이천사백사십칠원(W1,063,992,447)의 파산채권 일체.

2. [] 주식회사가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46 파산사건과 관련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일십일억팔천칠백구십육만일천팔백칠십구원(W1,187,961,879)의 파산채권 일체.

1) 원고는 소외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하나 E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선택한다.